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시험 장소 공고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소방청장

I. 시험일시: 2022. 10. 8.(토) 10:00 ~ 10:50

| 시험명 | 시험시간 | 시험범위 | 비고 |
|--------------|---------------------|--------------------------|----------------------|
| 화재대응능력 1급 | 10:00 ~ 10:50 (50분) | 화재대응능력 1급 교범 및 문제은행 內 | 09:30:00까지 입실 |

※ 코로나19 격리대상자는 자진 신고하여야 별도시험 응시가 가능【공고문 5p 참고】

※ 09:30:01 시험장 출입구 폐쇄(입장 불가)

II. 시험장소

| 시험장 | 주소 | 출입구 | | 입구기준 |
|---------------------|--------------------------|-------|----------|----------------|
| | | 개방시간 | 폐쇄시간 | |
| 1 중앙소방학교(공주)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계실리) | 08:30 | 09:30:01 | 강의동 2층 주출입구 |
| 2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 | 제주시 산천단동길 24(아라동) | | | 대강의실 주출입구 |

※ 개인별 시험실은 응시표를 출력하여 확인

III. 준비물

가. (응시표) '22. 10. 5.(수) 10:00 119고시 누리집에서 출력*

* 119고시 누리집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나. (신분증)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 전자신분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 불가

다. (필기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IV. 응시자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인 정: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불인정: 자격수첩,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 응시표 출력 후 필기시험에 지참할 것

나.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30:00 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함

□ 시험장 폐쇄시간 및 유의사항

시간 기준: 08:3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출입구 폐쇄
입구 기준: (중앙소방학교) 강의동 2층 출입구, (제주소방교육대) 대강의실 주출입구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함

다.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함.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

라. 모든 시험은 우천,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와 일정 등을 공지함

마.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책상, 벽 등에 필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2 답안지 작성 및 부정행위 등 안내

- 가.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음
- 나.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훼손한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다.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야 함

-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
-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해야 함.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함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 1)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테블릿 PC 등
- 2)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마.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바.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사. 시험시간 관리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아.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할 것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함

자. 답안지에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시험감독관 서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함

□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

- 부정행위자 조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준용
- 시험지(문제지, 답안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차.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V.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함.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반드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에 신고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함.

다.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코로나19 별도시험장 운영 안내】

1. (대 상) 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
- ②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2. (신청기간) 2022. 10. 3.(월) 09:00 ~ 10. 7.(금) 18:00까지

※ '22. 10. 7.(금) 18:00까지 자진신고 및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함.

3. (신청방법)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유선통보(044-205-7294) 후 e-메일 제출(rok409@korea.kr)

4. (제출서류)

-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서식2】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 ③ (병원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

| 구 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확진(재택치료) | ①, ② |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확진자 별도시험장에서만 시험응시 가능(병원 등의 시설 응시 불가) |
| 확진(병원·생활치료) | ①, ②, ③ | |
| 자가격리자 | ①, ② | |
|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 | |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별도시험 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검사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Ⅵ. 필기시험 이후 일정

| 필기시험 | 출제문제 문의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
| 10. 8.(토) 10:00 | 10. 8.(토)~10. 9.(일) | 10. 14.(금) 14:00 |
| · 중앙소방학교(공주) · 제주소방교육대 | 119고시 누리집 | 119고시 누리집 |

- 필기시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044-205-7287~7294
 - 실기시험: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 041-840-6825
 - 인증서 발급: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044-205-7472
- <문의방법>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제외)

VII. 필기시험장 위치

□ 중앙소방학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계실리)

| 위 치 | |
|---|--|
| | |
| 교통편 안내 | 기타사항 |
| <p>택 시: 공주버스터미널 ↔ 중앙소방학교 (20분, 16km)</p> <p>버 스: 217번, 720번, 721번</p> | <p>주차: 정문 통과 후 좌측 주차장 이용 (운영요원 안내)</p> <p>응시번호별 시험실은 시험당일 본관입구 안내도 확인</p> |

□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 제주 제주시 산천단동길 24 (아라일동)

| 위 치 | |
|---|--|
| | |
| 교통편 안내 | 기타사항 |
| <p>택 시: 제주국제공항 ↔ 소방교육대 (30분, 13km)</p> <p>버 스: 181번, 212번, 222번, 281번, 475번</p> | <p>주차가능대수: 100대 ※ 인재개발원 주차장 이용</p> <p>응시번호별 시험실은 시험당일 본관입구 안내도 확인</p> |

[서식 1]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 | | | | |
|---------|---------|---|------|--|
| 문 제 문 의 | 성 명 | | 응시번호 | |
| 연 락 처 | 휴 대 전 화 | | | |
| | 전 자 우 편 | | | |
| 응 시 분 야 | 응 시 시 도 | | | |
| | 응 시 분 야 | | | |
| 문 의 과 목 | 해 당 과 목 | | | |
| | 문 항 번 호 | 번 | | |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인적사항

| | | | |
|---------|-----|---------------------------|---|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휴 대 전 화 | - - | 응 시 번 호 | |
| 현 주 소 지 | | | |
| 격 리 기 간 | | 관 할 보 건 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신 청 사 유 | | | |

제출 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공통)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공통)
- 의사 소견서(병원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 구 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확진(재택치료) | ①, ② |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확진자 별도시험장에서만 시험응시 가능(병원 등의 시설 응시 불가) |
| 확진(병원·생활치료) | ①, ②, ③ | |
| 자가격리 | ①, ② | |
|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 | |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이상, 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